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 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 양자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자립화 추진 등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의4 신설).

-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감면 및 공공기관의 양자과학기술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신설).
-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6 신설).
-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7 신설).
-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 마련 및 공공기관 등의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양자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보급,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인력 양성사업에 포함함(안 제21조제2호 신설).
-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입지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 상용화 촉진 및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신설).

II. 검토의견

1. 안 제14조의5에 따른 세제 지원 등

○ 개정안¹⁾은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²⁾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는 「지방

1) 안 제14조의5(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 12. 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 12. 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 5. 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 1. 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세특례제한법」 3)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안 제14조의5제1항을 삭제하고 조문 제목 및 내용을 이하 표와 같이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의견
제14조의5(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우선구매)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안 제18조의2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

- 개정안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4)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5)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에 대해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각 기관별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별 보안상황 또는 양자보안체계의 필요성이나 재정적·기술적 측면 등에 대한 고려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양자보안체계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의견
제18조의2(양자보안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양자보안체계의 구축) ----- ----- -----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책 및 제3항의 기술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u>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u>정부는 관계</u>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u>장(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u> 제1항의 대책 및 제3항의 기술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u>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u>

3. 안 제35조에 따른 청문절차

- 개정안은 제14조의3제4항 및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해서만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4조제4항,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⁶⁾

개정안	수정의견
제35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u>1.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의 지정 취소</u> <u>2.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의 지정 취소</u>	제35조(청문) ----- ----- -----. <u>1. 제14조제4항, 제14조의3제4항, 제1 4조의4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 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u> <u>2.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u>

- 그 외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혜 진)

6) 법률상 지위와 기능이 유사하여 청문 절차 적용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